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해외통관애로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최영훈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관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최영훈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관

1 서언

지난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시기였다. 인도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였다. 2021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9.2%로 주요 경제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21년~'22년 회계연도 인도의 수출입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6% 증가한 4,219억 달러, 수입은 55.3% 늘어난 6,126억 달러였다. 수출의 경우 석유제품, 기계기구류, 보석류, 화학제품, 의약품 등이 주도했다.

수입은 경제활동 재개 및 내수가 살아나면서 원유, 석탄, 금,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의 수입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이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에서 인도로의 수출금액은 2010년 114.3억불에서 2021년 156억불로 36%가 증가하였고, 인도에서 한국으로의 수입은 2010년 56.7억불에서 2021년 80.5억불로 약 41%가 증가하였다.

한-인도 CEPA 발효 10년의 효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2020년 인도정부는 CAROTAR¹⁾라는 원산지 관리강화 방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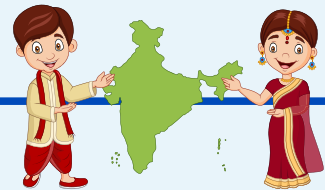
1)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 규정, 2020.3.21. 시행)

마련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교역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적으로 한-인도 CEPA를 활용한 내수시장 공략은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인도의 값싼 노동력과 수출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공급망 확대 및 안정적인 생산시설 구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본문에서는 인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수출지원제도인 RoDTEP제도와 특별경제구역(SEZ)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2 RoDTEP제도



가. 도입배경

지난 '20년 2월 인도 정부는 수출금액에 대한 환급제도인 MEIS(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를 폐지하고, 제품 수출 과정 내 발생하는 제세에 대한 환급제도인 RoDTEP (The 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ed Products)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15년 4월부터 운영되어왔던 MEIS는 수출 확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인도 정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제도였다. 철강, 의약, 화학, IT, 전자기기, 섬유 등 다양한 산업

내 총 5,012개 품목에 대해 수출금액의 2~5%를 Tax Credit으로 환급해주었다.

하지만, 미국이 인도가 MEIS를 포함, 수출 촉진 자본재 계획(EPCG²⁾) 등 다양한 수출보조 제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8년 3월 WTO에 정식으로 인도를 제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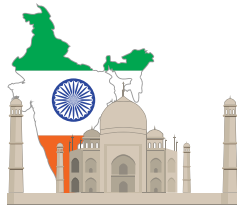
'19년 10월에 인도가 패소하였고 '19년 11월 인도가 다시 항소하여 진행 중이다. 한편, 동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수출금액에 대한 환급으로 MEIS 관련 부채가

2)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자본재 수출 진흥 정책으로 수출을 하는 자본재 수입시 일정부분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

2019/20 회계연도에 4,500억 루피(한화 6.7조원)까지 증가하는데 비하여 수출 효과는 기대치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외적인 WTO 규범을 고려하고 내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종료를 발표하고 새로운 제도인 RoDTEP을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기존 MEIS가 수출금액(FOB)에 대해서만 일정비율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였다면 RoDTEP은 수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소요되는 운송, 제조 과정을 포함하여 각종 문서발급 수수료나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동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인도 정부는 매년 5천억 루피(한화 약 8조 원)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수출업자들은 수출을 위해 사용된 비용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급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Tax Credit 형태로

세금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Tax Credit이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는 것과 MEIS보다 환급대상이 추가된 것도 특징이다.

(표 1) RoDTEP 적용대상

- ㉠ 수출 제품 운송 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중앙·주정부 세금
- ㉡ 전력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세금
- ㉢ 농업분야에 사용되는 연료나 전기에 대한 세금
- ㉣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세금
- ㉤ 농업 농산물 시장위원회(APMC)에서 부과하는 농산물 구입·판매 수수료(Mandi Tax)
- ㉥ 수출입 관련 문서 발급 수수료 및 이동 중 고속도로 통행료

2) 대상 품목과 환급비율

RoDTEP 적용되는 대상품목은 HS 8단위 기준으로 8,555개를 대상으로 고시³⁾ 하였고, 기존 MEIS 대상인 5,012개 품목보다 확대되었다. 다만, 제약, 철강, 유기 및 무기 화학 물질에 대하여는 대상품목에서 제외를 하였다.

환급 비율은 0.5%에서 4%대 까지 다양하며, 지난 '22년 1월 5일 발표한 고시⁴⁾에 따르면 인도의 HSN 8단위 기준으로 8,731개의 품목을 적용대상으로 고시하여 운영중에 있다.

3) APPENDIX 4 R - Notified on 17.08.2021 under Notification No 19/2015-20 (인도 대외무역총국 공고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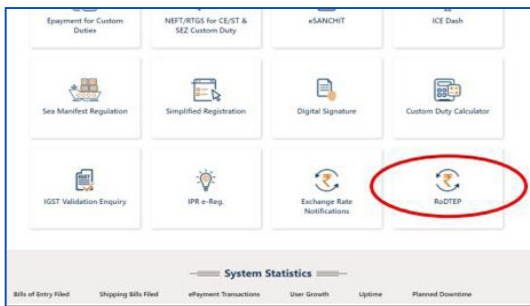
4) <https://content.dgft.gov.in/Website/dgftprod/30e0d362-2d01-4ba4-afc0-2389d0d7eaa5/RoDTEP01052022.pdf>

3)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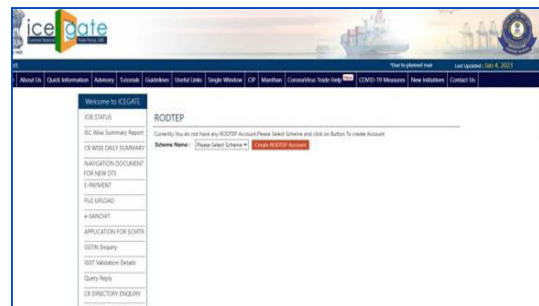
먼저 RoDTEP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출자는 수출신고 단계인 적하목록(EGM;Export General Manifest)단계부터 신청을 해야 한다. 세관에서는 적하목록과 수출신고를 토대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세관 승인 후에, 수출자는 ICE-GATE에 접속하여 해당 RoDTEP계정을 생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계정이 생성된 후 수출업체는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한다. 전송된 자료를 토대로 세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생성되는 환불 금액이 입금되고 수출자의 원장 계정에 반영되며 다른 수입업자에게 이전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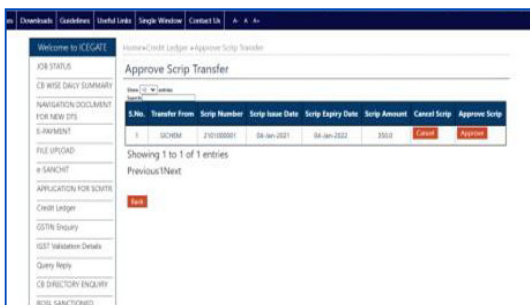
(그림 1) ICE-GATE내 RoDTEP 접속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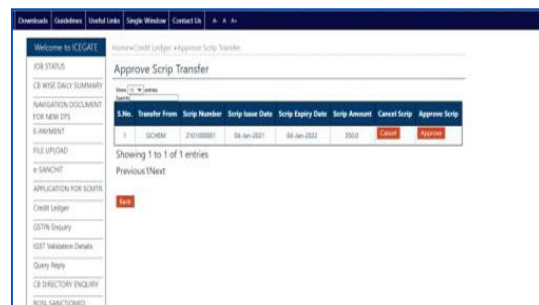
(그림 2) ICE-GATE내 RoDTEP 스크립트 생성



(그림 3) ICE-GATE내 RoDTEP 접속화면



(그림 4) 입력 내용 조회



다. 기대효과

RoDTEP제도는 기존 MEIS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도입한 것으로 수출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계속 유지한다는 정책목표는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특정 산업별로 환급비율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무선통신기기 업계에 따르면 MEIS로 받을 수 있었던 인센티브가 2~4%인데 비하여,

RoDTEP의 기대치는 0.2~0.7% 수준으로 낮다고 한다.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 무기화학 제품(HS 28류), 유기화학 제품(HS 29류), 의약품(HS 30류), 철강제품(HS 72류, 73류)에 대하여 다른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③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제도

가. 도입배경

경제특구 제도는 수출증대를 위하여 자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임가공 수출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에 각종 세제혜택이나 정책적 배려를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인도는 2004년 4월부터 경제특구제도를 운영하였고, 몇 차례 법 개정을 거쳐 2005년에 ‘The Special Economic Zone Acts 2005’라는 안으로 확대하여 2006년 2월에 정식으로 발효하였다.

인도의 SEZ는 관세 및 무역의 목적으로 인도 내에서 외국 영토로 간주되며 이 구역은 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면세 수입, 창고 보관 및 재수출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SEZ 정책에 따라 인도의 경제특구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기존 2006년부터 운영해오던 특별 경제구역 제도의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운영현황

‘21년 말 기준으로 인도에는 약 268개의 특별경제구역이 운영되고 있고 총 투자금액은 약 829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특별경제구역에서 수출액은 INR 5,300억 루피(미화 약 700억) 정도이고 경제특구에 고용된 인력은 250만명 정도이다.

(그림 5) 인도 경제특구 현황



인도 SEZ는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담당하고, 실질적인 주최는 주정부에서 하고 있다.

주정부에서 세운 각종 개발공사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고, 개발공사의 100% 단독투자에 의한 것과 민간기업과의 합작투자에 의한 것으로도 구분된다.

설립하는 주체도 인도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도 투자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또한, SEZ 설립의 목적에 따라 기업의 입주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방형 SEZ도 있고, 이와 달리 특정 민간 기업이 자신의 특정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SEZ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설립절차

SEZ 지정과 운영의 주최는 인도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산하 상업국에 설치된 BOA(Board of Approval)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BOA는 SEZ 운영과 관련된 정부기관 담당자로 지정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In-principal Approval 단계로 주 정부의 추천을 받아 중앙정부에 SEZ 지정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기본적인 개발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취득 여부는 상관없다.

2단계는 Formal Approval은 형식승인단계로 개발사업자는 2-3년 유예기간동안 토지취득 또는 사용허가 등을 구체적인 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와 개발사업 내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2단계를 승인받은 SEZ개발회사는 BOA가 만족할 수 있는 토지취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OA로부터 Notification을 받아야 비로소 특구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이 발효가 되는 것이다. 이에 개발사는 입주기업 모집이나 지구 개발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SEZ가 공고되면 사실상 운영되는 SEZ로 할 수 있으나, 보통 공고 이후 기반구성에도 1-2년이 지난 후 정식 Operational SEZ에 편입된다. 사실상 특정 기업이 설립 목적에 따라 기업에 특화된 경제구역을 찾고 입주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라. 입주시 고려사항

아직까지 인도 SEZ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많지 않다. 인도 진출이 내수판매 위주이고 지리적인 위치나 문화적 차이로 생산시설 이전까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인도 SEZ에 입주시 고려사항은 우선 주정부의 정책을 잘 검토 해봐야 한다. 인도는 28개의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 정부로 주정부별로 산업에 대한 기본 정책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모든 SEZ의 설립목적은 잘 검토하여 특수목적, 산업에 따라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SEZ의 인프라 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SEZ에 갖추어지는 인프라 환경은 개개의 특구별로 사정이 다르다. 전력과 상수도, 접근하는 교통망도 점검을 해야 하고 필요시 현장답사를 통한 확인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교육 등 경제 특구의 생활환경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

인도 진출이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관계로 향후 주거환경이나 자녀들의 교육여건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일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출퇴근이 불편하고 근린 생활 시설이 개발되지 않아 입주를 꺼리는 특구도 있다.

마.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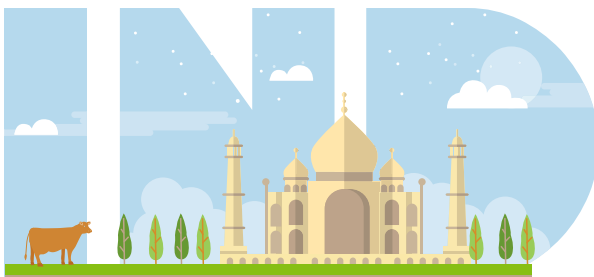
SEZ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수출입 면세 및 세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SEZ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와 더불어 내국세도 면제를 받는다.

SEZ로 반입되는 자본재, 원자재, 소모품 등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15년간 법인세 면제로 최초 5년간 100%, 향후 5년간 50%, 나머지 5년 동안 최대 50% 감면을 지원받는다. 토지 임대나 면허에 대한 인지세 및 등록 수수료도 면제가 된다. 국내시장에서 조달한 자본재, 원자재에 대한 중앙소비세나 서비스세도 면제가 된다. 또한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SEZ에 세관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정기적인 화물검사도 제외된다.

두 번째는 통합창구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절차이다. 공장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합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통하여 토지 임대 승인, 정부 승인, 관련 시설

건설 등 입주를 위한 모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된다. 공장 설립을 위한 행정서류 처리절차에서부터 가동 가능한 공장(Ready Built Factory) 이나 건설업체를 직접 연결해주어 공장설립 및 운영을 위한 준비시간이 최대 1년 미만으로 짧은 편이다.

세 번째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환경을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토지개발과 임대료는 주변지역과 비교해서 매우 저렴하고 통상 99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제특구도 있다. 공장운영 인력도 주변 지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제특구내 기술훈련 센터가 있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도 공급받을 수 있다. 특구내 입주한 기업들은 노조가입이 불가하며, 노조문제가 발생할 때에 특구사무소에서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력, 상수도, 하수처리장이 잘 마련되어 있어 전력공급 단절, 단수 문제 등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4 시사점

이상 인도의 수출제도인 환급제도와 SEZ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최근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인도를 글로벌 생산 기지로 만들기 위해 'Make In India'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립 인도 (Self-reliant India)' 캠페인 아래, 제조업을 강화하고 노동법 등 제도를 개혁하여 정부주도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를 증가시키고 수출 증가를 위해 외국기업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며, 정부 투자기관들은 직접 상담을 해주거나 인증, 승인 절차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RoDTEP은 소프트웨어로 수출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한 수출을 장려하는 제도이고, SEZ는 하드웨어로 노동력을 활용, 공장설립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도 내수시장 공략이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지난 25년 이상 현지화와 토착화를 통하여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에 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인도의 내수시장 공략에는 한계가 있다.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기반으로 RoDTEP이나 SEZ 제도를 활용하여 인도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